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233호
나. 발의자 : 김형재 의원(찬성자 28명)
다. 발의일자 : 2025년 10월 20일
라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‘종신제’처럼 운영되고 있었음. 이로 인해 심의위원 고착화 및 소위 ‘카르텔’ 형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.
- 이에 조례 내에 심의위원의 임기를 따로 명시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규정함(안 제14조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공모사업 심의 시, 심의 위원의 임기에 제한이 없음에 따라 파생되는 심의위원 고착화 및 카르텔 형성 문제를 방지하고, 심의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뜻의되었음.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라 지적되는 카르텔 형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문화예술 시장을 장악해 입시, 채용, 공모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.
- 특히, 공적 영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술인 공모사업에서 심의위원과 예술단체 간의 연결고리로 특정 예술인만이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,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좌절되고 예술계의 다양성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.
-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 추천 시 이해관계자 제척·기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, 문화예술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모든 예술인이 공정하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임.

- 현행 조례는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개괄적인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, 공모사업 등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규칙을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서울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의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재단 내 모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내부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, 특히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의 교부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별도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.
- 그러나 동 개정안이 제안한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카르텔 형성 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고, 재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다. 공모사업 심의위원의 임기 규정 추가(안 제14조)

-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,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공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현장성, 전문성, 다양성을 갖춘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- 예술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는 먼저 매년 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추첨하는 절차로 진행되며, 이때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심의위원의 제척사항을

검증하고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성별과 연령 등이 공정하게
안배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함.

<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>

구분	예술지원 통합 심의위원회 (예술지원정책팀)	사업별 심의위원회 (각 사업팀)
1	전년도 통합 심의위원회 검토	사업별 심의위원 3배수 구성 및 제척사항 확인
2	통합 심의위원회 후보자 제척사항 검증 (문체부 협조)	추첨을 통한 심의위원 섭외 순위 확정 (윤리경영실 참관)
3	통합 심의위원회 확정	심의위원 확정 및 심의 진행

- 실제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,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예술지원 사업인 ‘예술창작활동지원’ 사업의 심의위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282명으로, 장르 구분 없이 중복으로 선정된 심의위원은 총 33명이었으며 이 중 3년 연속 선정된 심의위원은 1명이었음.

< 2023년~2025년 3개년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중복 선정 심의위원 수 >

(단위: 명)

구 분	총 계	1회	2회	3회
심의위원 수	282	249	32	1

- 이에 따라, 서울문화재단은 2026년도 예술지원 통합공모부터 2년마다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,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 매뉴얼을 보강하고 부적격 대상 선정 방지를 위한 타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의 과정을 개선하고자 함.

- 또한,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

종신제로 운영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‘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’라고 조례 내에 명시하여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힘.

- 다만, 동 개정안이 제시한 안 제14조의 제목을 ‘심의위원’에서 ‘공모사업의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’으로 구체화하여 ‘재단의 사업’을 ‘재단의 공모사업’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, ‘심의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’를 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’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 수정 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<u><신 설></u>	<u>제14조 (심의위원) 재</u> <u>단의 사업을 심의하</u> <u>는 심의위원의 임기</u> <u>는 2년으로 하고 연</u> <u>임할 수 없으며, 그</u> <u>밖에 심의위원 위촉</u> <u>및 운영에 관한 사</u> <u>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	<u>제14조 (공모사업 심의</u> <u>위원회의 설치 등)</u> <u><삭 제></u>
	<u><신 설></u>	<u>① 재단은 공개모집의</u> <u>방법으로 지원사업</u> <u>대상자를 선정할 수</u> <u>있으며(이하 “공모사</u> <u>업”이라 한다.), 공모</u> <u>사업의 심의 또는</u>

	<p>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 제 기관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.</p> <p>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</p> <p>제15조 ~ 제19조 (개정 안과 같음)</p>
<p>제14조 ~ 제18조 (생략)</p>	<p>제15조 ~ 제19조 (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</p>	

의안번호
3233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김형재 의원(1인발의)	2025.10.2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p>〈개정 필요성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'종신제'처럼 운영되고 있었음.이에 조례 내에 심의위원의 임기를 따로 명시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. <p>〈주요 입법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규정함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'25.10.20. 조례안 제안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 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 필요'재단의 사업'은 제안 이유에 맞게 '재단의 공모사업'에 적용되게 규정하고, '별도로 정한다.'는 '대표이사가 정한다.'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 있음.		
대응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의원실 및 전문위원회와 수정 협의		
상 임 위 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보류, 미상정으로 구분) - 수정가결시 수정내용, 부결·보류·미상정시 사유 기재		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팀장	노은영(☎2133-2552)
		담당	최종규(☎2133-2555)